

2018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침서

● 목적 : 청년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 및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개선

중소기업에 청년층 우수인력의 유입촉진 및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5년)과 목돈마련 (3천만원 수준)의 기회 제공

1. 가입자격

- (청년)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최대 만39세로 한정
-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중견기업
 - *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가입요건 확인

구분	가입요건	제출서류
청년	재직 1년 여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연령 *만15세 ~만 34세이하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특수관계인 여부 * 최대주주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신청대상제외	가입시 자가진단, 가족관계증명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제외) *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 통장 제외	-
	적정수급 여부 (부정수급 방지)	가입시 자가진단
	정부 및 지자체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신형성사업 참여자(참여한자)	가입시 자가진단
기업	가입제한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휴·폐업기업	-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신청대상제외	가입시 자가진단, 주주명부
	세금체납	국세납세증명서
	정규직 여부	가입시 자가진단
	적정수급 여부 (부정수급 방지)	가입시 자가진단

* 만34세 초과 인력중 군필자에 대해서는 병적증명서 징구·확인

3. 공제 가입제한

◎ 중소기업

- 제외 업종 : 부동산업(68),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56211, 무도유흥 주점업 56212, 기타 주점업 56219), 기타 갬블링 및 베탱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 1) 휴·폐업, 세금(국세)체납 기업
-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예: 비영리 법인 등)

◎ 청년근로자

-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
-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4. 가입기간 및 적립금액

- (공제성립일) : 1회차 청년, 기업 적립금 이체 날.
- (가입기간) : 5년(60개월)
- (적립금액) : 최소 3,000만원 이상
 - (청년납입금) 월 최소 12만원 → 5년 720만원
 - (기업납입금) 월 최소 20만원 → 5년 1,200만원
 - (정부지원금) 7회 1,080만원 → 3년 1,080만원
 - * 청년과 기업의 공제부금 납입일은 5일, 15일, 25일중 선택

<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적립구조 >

(단위 : 만원)

구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소계
청년납입금	매월 12만원 x 60개월 = 720								720
기업납입금	매월 20만원 x 60개월 = 1,200								1,200
정부지원금	120	120	150	150	180	180	180	-	1,080

* 청년, 기업 적립금은 최소 일정금액이상 납입 가능(예-30만원씩 입금 가능)

5. 정부지원금 지급

- (지급회차) : 청년과 기업이 매월 정상납입시 1, 6, 12, 18, 24, 30, 36개월 차 정부지원금 지급·적립
 - 단, '18.6.25일까지의 신규 가입자에 한해 1개월차 정부지원금 '18.6.30일 일괄 지급
- (지급방식) : 청년과 기업이 매월 정상납입시 **안양과천상공회의소**의 요건 검토 및 **중진공 승인**을 거쳐 지급
- 정부지원금 지급 요건

구분	요건	제출서류
청년	재직 여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적정수급 여부 (부정수급 방지)	-
기업	휴·폐업기업	-
	세금체납 여부	국세납세증명서
	적정수급 여부 (부정수급 방지)	-

6. 공제 전환 가입자(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전환자격 : '18.12.31일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 및 청년근로자
- (청년)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이상 재직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근로자
 - * 내일채움공제 청약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자도 전환 가능
- (기업)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전환요건 확인 : 신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동일

[내일채움공제 가입 CASE별 전환기준]

○ Case 1 : 3.15일 이전 가입 & 1년 이상 재직 → 3.15일 소급하여 정부지원금 지급
○ Case 2 : 3.15일 ~ 추경전 가입 & 1년 이상 재직 → 내일채움공제 계약성립일로 소급하여 정부지원금 지급
○ Case 3 : 추경이후 가입 & 1년 이상 재직 → 전환가입시점부터 정부지원금 지급

* 단, 6.25일까지 전환가입자에 한해 1회차 정부지원금 6.30일 일괄 지급

7. 중도해지로 인한 해지환급금 지급기준

○ 중도해지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 기업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청년 근로 자 귀책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지원금 반환
기타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 정부지원금 해지시기별 지급 및 반환되는 해지환급액

(단위 : 만원)

중소기업 귀책사유	시기별 적립된 정부지원금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중소기업 귀책사유	적립주기 (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적립금액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누적 금액	120만원	240만원	390만원	540만원	720만원	900만원	1,080만원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1,080만원 x 가입 후 근무월/60개월							

8. 만기시 공제금 지급기준

- (만기시점) :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60개월 이후 재직시

* 1회차 청년, 기업납입금이 모두 납부된 때

【예시】 2018년 7월 1일 공제가입 청약 (납부일자 5일)

구분	청년공제금 납입일	기업기여금 납입일	정부지원금 적립일
1회차	2018.7.5	2018.7.5	2018.7.30
⋮	⋮	⋮	
60회차	2023.6.5	2023.6.5	-
만기시점	2023.7.4		

- (공제금) : 공제부금 납입누계액과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에 만기이자(복리)를 더한 금액
 - 공제사유 : 공제계약 성립이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경우 공제금 지급
단 정부지원금 적립기간 중 공제부금 미납시에 중도해지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지급

【만기시 CASE별 지급금】

- ✓ **Case 1** : 계약이후 3년 이상 미납금 없는 경우
→ 공제납입금 + 정부지원금 + 이자(지급이율 적용) 지급
- ✓ **Case 2** : 계약이후 3년 이내 미납금 있는 경우(단서 조항)
→ 공제납입금 + 정부지원금 + 이자(중도해지이율 적용) 지급

- (공제금 지급)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등 재직여부 확인 후 공제금 지급
⇒ 중도퇴사 등 가입기간내 재직 미확인시, 중도해지 처리

9. 공제부금 납입중지

- (계약자 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예방 및 계약자 권익보호를 통한 공제사업 공정성 강화

납입중지 사유	납입중지 기간	비 고
병역의무 이행, 육아휴직	해당기간	해당사유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납입중지기간 연장 가능
재해, 개인질병	6개월	
일시적 경제사유	12개월	

10. 기업 납입금 세제혜택 및 청년 혜택

○ 기업 : 중소기업 납입금

- 전액 손금(비용)인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별첨참고)

(당해년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모든 청년에 적용(예-생산직도 해당함)

○ 청년근로자 : 만기공제금 수령시 중소기업 납입금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50%감면

○ 청년 대출 : 자격요건 -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이상,

대출일 현재 공제부금 납입 지체 없을 경우

지급한도 - 납부한 공제금(공제계약대출금-대출한도 90%)